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1. 청소년육성기금	3
2. 여성발전기금	13
3. 통합관리기금	21
4. 지방채상환기금	27
5. 남북교류협력기금	33
6. 자활기금	41
7. 사회복지기금	49
8. 식품진흥기금	61
9. 투자진흥기금	71
10. 중소기업육성기금	79
11. 체육진흥기금	87
12. 재난관리기금	93
13. 환경보전기금	101
14.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109
15.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17

1. 청소년육성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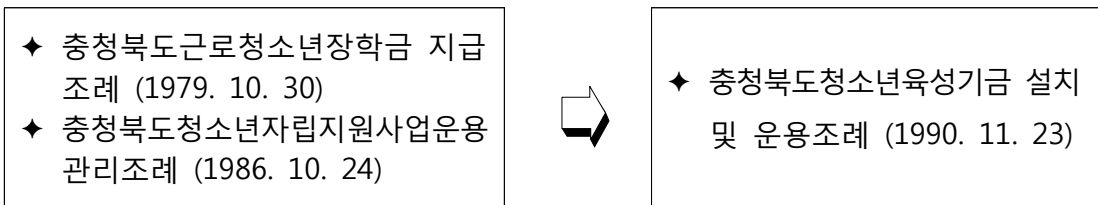


여성정책관

‘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소년소녀가장, 산업체 근로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
- 설치운용 : 개별조례에 의거 2개의 기금운용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운용 (1990. 11. 23)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1	21	879	23	25	△2	87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장학금 20,500천원 지원 / 41명
- (잘된점) 2013년 기금운용 수익으로 도내 고교학생 41명(산업체 야간고교 재학 중인 근로청소년 17명 및 시군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24명)에게 1인당 500천원의 장학금 지원으로 지속적인 학업 격려 및 사기진작 도모

- (미흡한점) 도의 재정여건 및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조치계획) 기금 추가확충 및 이자수입 재적립 등을 통해
기금 확대조성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존치필요성)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등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및 자립정착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탈선
예방 등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25	21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장학금 지원 (15백만원, 30명)	○ 장학금 지원 (15백만원, 30명)	100%
'13년	○ 장학금 지원 (25백만원, 50명)	○ 장학금 지원 (21백만원, 41명)	84%

- 정성적 평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및 산업체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지원을 통해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
 -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으로 위기청소년 발생 방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총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및 생활 정착지원	<장학금 지원> · 대상 : 산업체 야간특별학교 근로학생 및 시군 소년소녀가정 · 선정 : 산업체근로학교장 및 시장군수 추천 후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액 : 500천원/1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979년부터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8억7천9백만원으로 현재까지 기금설치 운용의 목적과 청소년들의 건전육성도모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 옴
- 2013년 말까지 총 1,301명에게 23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 향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 증액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해나가겠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 없음	
	'13	해당사항 없음	
	'14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 지원	21	장학금의 지속적인 지원 및 사업대상 확충을 위해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기금존치 필요	상 중 하
합 계	21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출연금, 이자수입, 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 재원규모

(단위:백만원)

조성액				집행액	잔액
계	출연금	이자수입	지정장학금		
1,110	665	397	48	231	879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단위: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196	100%	53	100%	59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147	75					
	예치금회수	20	10	24	45	38	64	
	예수금							
	이자수입	27	13	28	53	20	34	
	기타수입	2	2	1	2	1	2	
지 출	합 계	196	100%	53	100%	59	100%	
	고유목적사업비	25	13	15	28	21	3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47	75					
	예치금	24	12	38	72	38	6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청소년육성기금의 설립취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이 존치되어야 함
- 향후 기금 확대조성을 통해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등 기금 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2.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관

'14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32조
- 설치목적 :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 등 지원
- 설치년도 : 1997년 7월 11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2	86	5,562	136	111	25	5,58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2012년	2013년
건 수	18건	15건
금 액	109,047천원	86,215천원

○ 잘된 점

- 전체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년도에 이어 연속 추진한 사업은 전년도 평가결과 통보(도→단체)한 결과, 단체별 사업 추진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미흡한 점

-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발전방안

- 교육사업의 경우 특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사, 사례 발표 등 사후 평가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 사업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사업 개선에 반영할 필요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공고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고,
- 2001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 여성단체의 발전,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매년 공모를 통해 발굴, 추진하여 왔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1	109	98	86	86	100

※ 최초계획사업비는 2013기금운영변경계획(2013.12.2) 사업비임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18개 사업 111,441천원	18개 사업 109,047천원	98%
'13년	15개 사업 86,215천원	15개 사업 86,215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2년, 2013년 추진사업은 대체적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실적을 달성하였고, 사업비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
- 2012년에 추진한 「충북권역 캠페인 “성매매 아웃! 아동·여성 안심지역만들기」 사업은 여성·아동폭력방지 홍보 및 유해업소 제도 캠페인 실시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 「2012 총선 여성참여, 정치개혁 어디까지 왔나!」 는 4.11총선을 통해 나타난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고찰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 「아름다운 동행 “행복을 만나다” 부부캠프」 는 갈등 위기의 부부 동반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우수함
- 2013년에 추진한 「여성출소자 및 출소자를 둔 여성가정의 역량강화프로그램」, 「충북여성장애인연극교실」,충북권역 캠페인 「충북Clean, 성매매Zero, 행복Start」 등 여성출소자 및 수용자, 다문화가족, 여성장애인 등 관심사각지대로 소외 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우리사회가 점차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만들기 일환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느낄수 있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북도 여성 정책기본조례 제32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 등 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인재양성, 여성단체의 발전, 양성평등의식 확산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2년에는 「2012 총선 여성참여, 정치개혁 어디까지 왔나!」 및 「아름다운 동행 “행복을 만나다”부부 캠프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109,047천원을 지원하였음.
- 2013년에는 「여성출소자 및 여성수용자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충북전역캠페인 「충북Clean, 성매매Zero,행복Start」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86,215천원을 지원하였음.
- 관심사각지대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계층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차례의 기금 조성을 통해(1차 : 98년~2002 → 30억원, 2차 : 2007~2010 → 20억원)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현재 총 55억원 적립, 매년 이자수입의 90%이내에서 여성단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이 설치·조성된 바, 일반예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력 있는 형태로 매년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에 대한 창의적 사업 발굴·지원하여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할 필요 있음 	상 중 하
합 계	86		상 중 하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선정 심의시(여성정책위원회)도 및 시군의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함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성격 및 규모
 - 재원성격 : 이자수입
 - 재원규모 : 5,562백만원(2013년말 현재)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표 1-1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 사업 공고 전에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표 1-1>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1,607	100%	425	100%	448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1,234	76.8					
	예치금회수	225	14	226	53.2	315	70.3	
	예수금							
	이자수입	147	9.1	198	46.6	133	29.6	
	기타수입	1	0.1	1	0.2	0		
지 출	합 계	1,607	100%	425	100%	448	100%	
	고유목적사업비	147	9.1	110	25.9	87	19.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234	76.8					
	예치금	226	14.1	315	74.1	361	80.5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고유목적사업비는 여성단체 사업비지원외 전년도사업 평가수당(900천원) 포함 금액임

3. 통합관리기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14년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설치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7년 1월 1일 (조례제정일 2005년 11월 18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281	1,771	79,109	11,041	2,102	8,939	88,04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투지)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함
- (잘된 점)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함에 따라
 - ① 도에서 운용되는 각 기금의 운용실태 관리
 - ②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각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증대
 - ③ 도정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
- (존치 필요성) 도에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이 설치 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폐지되지 않는 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관리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 도			'13년 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454	33,511	82.8	32,469	32,180	99

② 목표 및 기대효과

○ 정성적 평가

- (각 기금의 통제기능 수행) 각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을 관리함과 더불어 여유자금을 파악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함으로서 각 기금에 대해 간접적 통제 기능 수행
- (각 기금 이자수입 증대)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후 발생하는 여유자금이 그동안 계획 없이 관리되었으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로 지급 받게 됨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
-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증대) 각 기금의 예수금 수입에 대한 정기예금 가입 및 일반회계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통합관리기금 조성 (* 이자수입 2,042백만원)
- (일반회계 재원마련)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재정에 2013.12.31.현재 73,700백만원을 예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 있음.

○ 정량적 평가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2년	○ 예수금 : 18,278 ○ 예탁금 : 25,000	○ 예수금 : 18,280 ○ 예탁금 : 25,000	100
'13년	○ 예수금 : 8,245 ○ 예탁금 : 25,000	○ 예수금 : 8,239 ○ 예탁금 : 25,000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충청북도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등에 용자

○ 기금 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 달성정도

-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매년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 받아 73,700백만원을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2011년 예수금 10,543백만원 / 예탁금 10,000백만원
- 2012년 예수금 18,280백만원 / 예탁금 25,000백만원
- 2013년 예수금 8,239백만원 / 예탁금 25,000백만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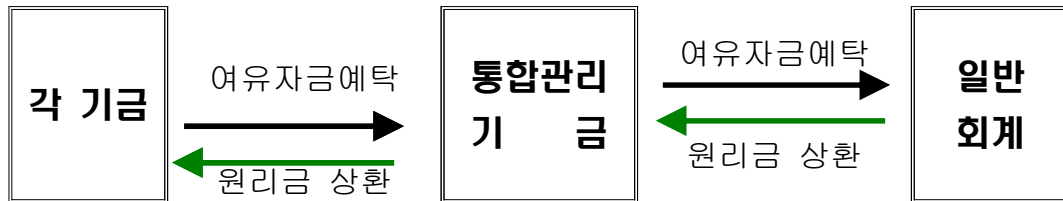
- 통합관리기금은 각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으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폐지 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와 별도로 존치 필요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관리기금 재원 조성

- 각 기금별 예탁계획 ⇒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통합관리기금 운용



-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도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도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0.5%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수입 및 정기예금 등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과거 3년간 수입·지출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입	합 계	17,276 / 100%	33,511 / 100%	32,180 / 100%	
	예탁금원금회수	4,585 / 26.5	12,151 / 36.3	15,218 / 47.3	
	예치금회수	318 / 1.8	588 / 1.8	6,681 / 20.8	
	예수금	10,543 / 61.1	18,281 / 54.5	8,239 / 25.6	
	이자수입	1,830 / 10.6	2,491 / 7.4	2,042 / 6.3	
지출	합 계	17,276 / 100%	33,511 / 100%	32,180 / 100%	
	예탁금	10,000 / 57.9	25,000 / 74.6	25,000 / 77.7	
	예치금	588 / 3.4	6,681 / 19.9	5,409 / 16.8	
	예수금원리금상환	6,687 / 38.7	1,830 / 5.5	1,771 / 5.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4. 지방채상환기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14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
- 설치년도 : 2004년 9월 13일 (조례제정 2001년 9월 13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	-	46	1	-	1	4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지방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안정적 채무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건정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에 예탁금리가 지방채상환 이율보다 낮아 조성액 중 12억원을 지방채(충북미래관 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 2012년~2013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은 없음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실적 : 12년 555억원 / 13년 596억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현재까지 우리도는 채무상환비율(7.54%, '13년말 기준) 및 예산 대비채무비율(15.93%, '13년말 기준) 등 채무지표로 볼 때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립을 활성화 하지는 않았으나, 적립목적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구성)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일 때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차입금상환 : 1,200 (충북미래관 원금)	차입금상환 : 1,200 (충북미래관 원금)	100
'12년	-	-	-
'13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충청북도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방채 상환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원조성이 이루어지며
- 2013년에는 공공예금 및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금액은 46백만원임.

※ 설치근거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과거 3년간의 수입·지출 실적

(단위:백만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입	합 계	1,244	100%	16	100%	1.4	100%	
	예탁금상환금	1,205	96.9					
	예치금회수	1	0.1	15	93.8	0.5	35.8	
	이자수입	38	3.0	1	6.2	0.9	64.2	
지출	합 계	1,244	100%	16	100%	1.4	100%	
	예탁금	29	2.3	15.5	96.9			
	예치금	15	1.2	0.5	3.1	1.4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1,200	96.5					

6. 향후 조치계획

-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에 의한 기금 존속기한(201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또는 기금의 폐지 여부 검토('14. 10월까지)
-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채상환 원리금 확보를 위하여 여유 재원 발생 시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임

5. 남북교류협력기금



안 전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목 적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
- 설치년도 : 2012년 11월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09	0	742	325	0	325	1,067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 남북교역과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의 정부 5·24 조치 발표에 의거 지자체간 남북교류가 중단되었으며,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지자체남북교류사업도 중단 상황
- 그러나 통일한국 준비를 위해서는 대북관계 추이에 따라 지자체간 교류는 물론 분야별 단계별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음
- 이에 우리 도는 농업분야에 한정했던 남북교류를 문화, 예술, 체육 등 전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남북교류 재개시 적시에 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농업교류협력기금을 남북 교류협력기금으로 이관하여 확대 조성중

- 대북관계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기금 존속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해 당 없 음		
'13년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공급	- 남북교류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남북교류사업	-	남북교류사업은 남북한 정세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적시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확보 필요	상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전입금 ('13년 300백만원)
※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에서 433백만원 이관 ('12년 11월)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북관계 추이에 따라 지자체 교류사업 재개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이 필요하며
- 농업분야를 비롯하여 남북간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번영을
위해 분야별 남북교류사업 발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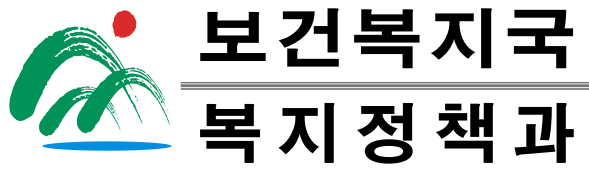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 / %	433 / 100%	309 / 100%	
	출연금			300 / 9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9 / 3	
	기타수입		433 / 100		
지 출	합 계	- / %	433 / 100%	309 /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410 / 94.7	309 / 100	
	예치금		23 / 5.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자 활 기 금**



'14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 설치년도 : 2000년 12월 30일(조례 제2632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67	265	1,788	76	277	△201	1,58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① 자활공동체 등 사업자금 융자

- 대 상 : 영동군 지역자활센터, 광역지역자활센터
- 융자금액 : 2건/190백만원

②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마케팅 사업비 지원 등
- 대상 및 기간 : 충북광역자활기업 등 9개 기관
- 예 산 액 : 50백만원

③ 지역자활센터 생산품전시회

- 일시·장소 : 2013. 6.14(금) 청원군/ 2013.7.9 코엑스
- 행사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 전시용 부스 지원 등
- 예 산 액 : 8.6백만원

④ 자활근로자 순회교육

- 일시·장소 : 2013.9.~9.10(3일간)/충주호암예술관, 도 여성발전센터
- 대 상 : 시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등(600명)
- 내 용 : 자활성공사례를 통한 의식제고 등 교육 실시
- 예 산 액 : 10백만원

⑤ 자활사업 민관합동 연찬회

- 기 간 : 2013.6.20 ~ 6. 21/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 참여인원 : 50명(시·군 업무담당자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내 용 : 자활사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예 산 액 : 7백만원

○ 잘된점

-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조례 개정 및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기금 활용 확대
- 자활기업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장 임대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제공으로 자활·자립 조기 성공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 인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계기 마련

○ 미흡한점

-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 고갈 우려
- 자활기업의 열악한 영업구조와 재무상태 물적담보 제공 및 일반 신용보증 이용이 곤란하여 사업자금 융자지원 실적 저조

○ 발전방안 및 향후조치계획

- 원금 손실의 최소화 범위내에서 연간 적정사업비 편성 운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탈출 자활지원 실시
-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 지속 발굴 및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

○ 기금 존치 필요성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 2000년부터 국비·도비를 출연하여 '13년말 현재 1,788백만원을 조성
- 2013년까지 도내 12개 자활기업에 725백만원의 사업장 임대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제공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양교육 실시와 자활 생산품 전시대회지원 등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본 기금은 수급자의 자활·자립 계기 마련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존치가 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85	285	58.7	377	265.6	70.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 전세자금융자 (300백만원, 3건) ○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5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생산품전시회 경비지원(10백만원) ○ 자활근로자연수대회(10백만원) ○ 자활사업 민관합동연찬회(7백만원) ○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10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 전세자금융자 (100백만원, 1건) ○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5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전시회 경비지원(10백만원) ○ 자활근로자연수대회(10백만원) ○ 자활사업 민관합동연찬회(7백만원) ○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108백만원) 	58%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 전세자금융자 (300백만원, 3건) ○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5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생산품전시회 경비지원(10백만원) ○ 자활근로자교육지원(10백만원) ○ 자활사업 민관합동연찬회(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임대 전세자금융자 (190백만원, 2건) ○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5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생산품전시회 경비지원(8.6백만원) ○ 자활근로자교육지원(10백만원) ○ 자활사업 민관합동연찬회(7백만원) 	70.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충청북도자활 기금조례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층의 자립 자활지원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자활사업 사기진작사업,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증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자활사업 12개소에 725백만원 융자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지원
- 자활기업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전시회 및 자활참여자 연수대회 개최 등 자활의지 향상과 자활생산품 인지도 제고, 판매촉진 유통강화를 위한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 이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음
	'13	없음
	'14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사업자금대여	300백만원	○신청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여건에 부합하는 자금의 탄력적 운영 및 용자된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채권관리 필요	상 중 하
②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마케팅지원	50백만원	○기금 고유목적 사업으로 자활 생산품의 사업비지원 필요	상 중 하
③자활생산품 전시대회 경비지원	10백만원	○기금 고유목적 사업으로 자활 생산품의 지속지원 필요	상 중 하
④자활근로자 연수대회	10백만원	○기금 고유 목적사업으로 자활 참여자 자활의지 향상을 위해 지속지원 필요	상 중 하
⑤자활사업 민관합동연찬회	7백만원	○기금 고유 목적사업으로 자활 사업 종사자의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필요	상 중 하
합 계	377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성격 및 규모

- 재원성격 : 도 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금 등

- 재원규모 : 1,788백만원

(단위:백만원)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계	출연금	보조금	용자금회수 · 이자수입		
3,305	332	1,325	1,648	1,517	1,788

※ 조성원금 : 1,657백만원(국비1,325백만원, 도비332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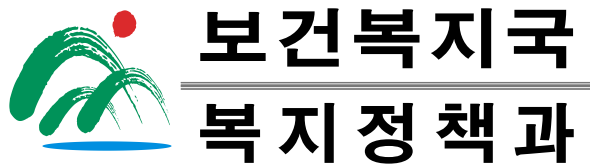
-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 자활기금 용자 대상사업자 발굴 확대 및 선정 지원
- 12개 시군 자활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시·군 지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효율성 확대를 위한 시·군 자활기금 운용 독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909	100%	495	100%	477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89	9.8	35	7.1	90	18.9	
	예탁금상환금			30	6.1	100	20.9	
	예치금회수	723	79.5	372	75.2	210	44	
	예수금							
	이자수입	97	10.7	58	11.7	42	8.8	
	기타수입					35	7.3	
지 출	합 계	909	100%	495	100%	477	100%	
	고유목적사업비	27	3	185	37.4	75	15.7	
	용자금	210	23.1	100	20.2	190	39.9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300	33					
	예치금	372	40.9	210	42.4	212	44.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7. 사회복지기금



‘14년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종류 :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 기금운용 : 개별조례에 의거 4개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1년 이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

< 4개 개별기금 → 사회복지기금 >

※ 개별 조례에 의거 4개 기금으로 운영

<재해구호기금>

- 1963. 3. 20. 재해구호법 제정
- 1993. 3. 26.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정

<노인복지기금>

- 1997. 4. 11. 충청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제정

<장애인복지기금>

- 1997. 10. 2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저소득층장학기금>

- 1992. 1. 17.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 사회복지기금으로 4개 기금 통합운영

<사회복지기금>

- 2001. 2. 9.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재해구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수급자자녀장학금)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82	206	20,179	1,520	334	1,186	21,36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금지원, 재해 구호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함.
- 따라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와 기초수급자·장애인·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 기금은 존치되어야 함.
- 사회복지기금 운영실태 별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으로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고 있음.
- 기금별 성격으로,
 -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은 '13년말 현재 조성잔액이 11억원으로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25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해 기금이 필요함.
 - 재해구호기금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하여 1963년부터 도 출연금을 적립하여 '13년 12월말 현재 조성잔액이 145억원으로 법정 최저 적립액(161억원)에 미달하여 '14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받아,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를 비축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은 '13년말 현재 기금잔액이 14억원으로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3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도 출연금으로 30억원을 조성하여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단체의 각종 소규모 복지사업의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1.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24.9	83

2. 재해구호기금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2	1	200	50	25

3. 장애인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7	72	61.5	120	94.9	79.1

4. 노인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36	12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1.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30백만원, 120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30백만원, 120명)	100%
'13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24.9백만원, 83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24.9백만원, 83명)	100%

- 정성적 평가 :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여

2. 재해구호기금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백만원)	○ 응급구호비 : 2백만원, 7가구(11명)	1%
'13년	○ 응급구호세트구입 : 100백만원, 600세트 ○ 응급구호비 지급 : 100백만원, 2,000명 ○ RFID 리더기 구입 : 15.6백만원, 13개	○ 응급구호세트구입 : 37.4백만원, 1,387세트 응급구호비 지급 : 0.05백만원, 1명 ○ RFID 리더기 구입 : 12.6백만원, 12개	23%

- 정성적 평가 :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물품 및 응급구호비 지급으로 이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 재해 대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집행률 저조

3. 장애인복지기금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117백만원, 14개 단체)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72백만원, 10개 단체)	61.5%
'13년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95.1백만원, 13개 단체)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94.9백만원, 13개 단체)	99.8%

- 정성적 평가 :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 단체의 각종 소규모 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단체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 및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사업의 내실 제고

4. 노인복지기금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16.5백만원) ○ 노인일거리지원사업 (9.5백만원) ○ 노인상담사업 (4백만원)	○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16.5백만원) ○ 노인일거리지원사업 (9.5백만원) ○ 노인상담사업 (4백만원)	100%
'13년	○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16.5백만원) ○ 노인일거리지원사업 (9.5백만원) ○ 노인상담사업 (4백만원) ○ 노인의날 및 경로행사 (6백만원)	○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16.5백만원) ○ 노인일거리지원사업 (9.5백만원) ○ 노인상담사업 (4백만원) ○ 노인의날 및 경로행사 (6백만원)	100%

- 정성적 평가 : 기금운용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회에서는 지원받은 운영비를 5차에 걸친 이사회·총회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북도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지원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저소득층 장학금</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u>재해구호기금</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생계구호 등 지원 -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관리 • <u>노인복지기금</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증진 사업 - 노인회 운영지원 • <u>장애인복지기금</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증진 -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저소득장학기금】

- 지원실적 : 83명 / 24.9백만원
- 지원기준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
(고등학생 300천원씩)
- 목적 달성정도 : 양 호

【재해구호기금】

- 응급구호비 지원 : 1명 / 0.05백만원
- 응급세트구입 : 1,387세트 / 37.4백만원
- RFID 리더기 구입 : 12개 / 12.6백만원
- 목적 달성정도 : 양 호

【장애인복지기금】

- 지원실적 : 13개 단체 / 94.9백만원
- 지원기준 :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부합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신체장애인 힐링체험, 장애인 복지공개 세미나
유기농 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 장애인 인권교육 등
- 목적 달성정도 : 양 호

【노인복지기금】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운영·지원 : 36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지도자 대학운영, 노인일거리지원(자원봉사) 사업,
노인상담사업 등
- 목적 달성정도 : 양 호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음	
	'13	· 이자수입 미적립 및 사업비 초과 집행 · 회계지출증빙서 인감(사인) 누락 후 지출	
	'14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원 (기초생활)	24.9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학비지원의 신속적 집행	중
② 이재민재해구호비 지원및구호물자구입 (재해구호)	215.6	·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지급해야 하는 신속성	상
③ 장애인복지사업	95.1	· 장애인복지단체의 다양한 소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	중
④대한노인회충청북도 연합회운영지원 (노인복지)	36	· 노인단체 및 복지사업 지원의 안정성	중
합 계	371.6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음	-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	
타 기금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성격 : 도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
- 재원규모 : 20,1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d)=(b)-c)		
19,903	482	206	276	20,179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2,154	100%	2,565	100%	2,913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577	73%	1,894	74%	2,431	83%	
	예수금							
	이자수입	577	27%	671	26%	482	1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154	100%	2,565	100%	2,913	100%	
	고유목적사업비	261	12%	134	5%	206	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26	4%	
	예치금	1,893	88%	2,431	95%	2,581	8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및 확대운영을 위하여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 지원 중임

○ 재해구호기금

- 최근의 기상이변 등을 감안, 대형화 되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 신속한 응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각종 재해구호 물자를 비축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신속하게 응급구호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증진, 장애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원 적립을 목표로 '13년말 현재 31.6억원으로 적립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책 발굴·추진 중에 있음
-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의 20%를 재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으나, 최근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자수입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 노인복지기금

-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확대된 노인복지욕구의 충족과 안정적인 노인여가·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인복지증진 시책 발굴이 필요하며, 재적립 없이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8. 식품진흥기금



‘14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1.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및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 설치 연도
1989년 1월 1일(조례제정일 2001년 4월6일 조례 제2651호)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372	1,072	10,983	1,179	1,622	△443	10,54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1989년부터 2013년까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2,929백만원 (순수적립액 10,983백만원, 융자채권 1,946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는 식품업소 시설개선용자금 저리용자, 향토음식거리 조성, 우수모범·대물림업소 육성, 밥맛 좋은 집 선정, 나트륨 줄이기 및 남은음식 제로화 운동, 식중독예방사업,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음.
- 사업추진 결과 식품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接客업소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음식 보존·육성, 음식업소의 경쟁력 확보 및 관광자원화,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49	1,292	70%	1,587	1,072	6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253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252백만원)	100%
	○ 모범업소지원 등 (71백만원)	○ 모범업소지원 등 (38백만원)	54%
	○ 향토음식거리지원 등 (293백만원)	○ 향토음식거리지원 등 (291백만원)	99%
	○ 식중독 예방관리 (32백만원)	○ 식중독 예방관리 (31백만원)	97%
	○ 시설개선유자사업 (1,200백만원)	○ 시설개선유자사업 (680백만원)	57%
'13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236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212백만원)	90%
	○ 모범업소지원 등 (121백만원)	○ 모범업소지원 등 (85백만원)	70%
	○ 향토음식거리지원 등 (203백만원)	○ 향토음식거리지원 등 (193백만원)	95%
	○ 식중독 예방관리 (27백만원)	○ 식중독 예방관리 (26백만원)	96%
	○ 시설개선유자사업 (1,000백만원)	○ 시설개선유자사업 (556백만원)	56%

- 정성적 평가

- 나트륨줄이기 및 남은음식 제로화 홍보물 제작 · 배부, 소비자 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비 보조, 음식문화 개선 워크숍 및 식품안전의날 행사 개최, 충북-제주간 외식문화교류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 등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우수모범업소, 대물림업소, 밥맛 좋은집 지정,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거리 지원 등으로 음식업소의 경쟁력 확보 및 향토음식 발굴 · 육성
-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간이검사키트 구입, 식중독지수 문자메세지 전송 등으로 식품안전성 제고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충청북도식품진흥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조사연구사업 ·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 모범업소지원사업 ·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989년부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129억원 정도로 현재 까지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어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 46개소에 1,66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 모범업소 지원사업은 우수모범업소, 대물림업소, 밥맛 좋은 집을 지정·관리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정업소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홍보책자 수록, 기존 지정업소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를 통하여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육성 및 지역 향토음식 계승발전에 기여하였고,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향토음식거리 7개소를 조성하여 지역의 대표음식을 명소화 및 브랜드화 하였음
-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배부, 집단급식소,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도모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 식품진흥기금 수입, 지출관리 부적정 -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 성과분석 필요	도감사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시설개선용자사업	1,000	신청자금에 대한 대출업소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의 변동 폭이 커서 예측이 어렵고, 대여청구업소의 신속한 지원요구에 부합하는 긴급 자금지원 필요(신축적 집행)	상 중 하
음식문화개선사업	236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상 중 하
모범업소, 향토음식 관련사업비 지원	324	음식업소 경쟁력 확보, 지역향토 음식 관광상품 개발육성, 지역 대표음식 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상 중 하
식중독예방관리	27	식품안전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사전진단, 홍보 등을 통한 식중독예방 활동은 특히 중요함	상 중 하
합 계	1,587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이자수익금
- 재원규모

(단위:백만원)

조 성 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전년도이월금	수입액			
12,055	10,683	1,372	1,072	10,983	순수적립액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별표 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의 설립취지는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위생관련 예산 대부분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편입시 식품위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금은 존치되어야 함
- 식품진흥기금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육성, 연구 등 식품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영업자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사업 외에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별도의 사업을 발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바람

<별표 1>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7,066	100%	5,825	100%	5,305	100%	
	출연금	-	-	-	-			
	보조금	-	-	-	-			
	차입금	-	-	-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089	15	1,279	22	845	16	
	예탁금상환금	1,000	14	-	-			
	예치금회수	4,443	63	3,975	68	3,933	74	
	예수금	-	-	-	-			
	이자수입	278	4	351	6	321	6	
	기타수입	256	4	220	4	206	4	
지 출	합 계	7,066	100%	5,825	100%	5,305	100%	
	고유목적 사업비	452	7	604	10	509	10	
	인건비	-	-	-	-			
	물건비	-	-	-	-			
	예탁금	2,200	31	600	10	300	6	
	예치금	3,975	56	3,933	68	3,934	7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기타지출	439	6	688	12	562	10	

9. 투자진흥기금



'14년도 투자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년도 : 2006. 12. 22
- 사업대상 : 기업유치 불리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 재원확보 :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활용
 - 투자진흥기금 조성액: 60억원(2007년 30억, 2008년 30억)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43	0	7,152	76	2,012	△1,936	5,216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업입지가 불리한 남·북부지역에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장부지등을 조성한 후 부지매각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토지매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옴.
- 미흡한 점(대안마련)
 - 기업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면담 실시 및 동의서 징구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 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3년도에 공유 재산 확보를 못했으며,
 - 당초 계획된 51필지에서 동의서 징구된 부분에 대해 2014년도 축소(28필지) 매입 추진하는 대안을 선택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48	6	0.2	4,014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업입지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조성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기업인들에게 개별입지를 적기 제공하여 기업불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군 분양 임대용 토지매입(3,635백만원) ○ 영동군 감정평가, 등기수수료(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군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6백만원) 	0.2%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군 분양 임대용 토지매입(4,000백만원) ○ 영동군 감정평가, 등기수수료(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징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동의서 징구 특별 대책반 편성 운영 - 51필자→28필자 동의서 징구 ※ 2014년 매입 추진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3조	기업유치불리지역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사업	공유재산 계획적 확보하여 입주기업에 매각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투자진흥사업	4,014백만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낙후지역에 공장부지 매입과 매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기금형태 유지가 필요함	상
합 계	4,014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정기예금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
 - 재원 60억('07년 30억, '08년 30억)을 확보 운영 중임

※ 설치근거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5,078	100%	7,015	100%	7,152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4,833	95.2	5,078	72.4	7,009	98	
	예수금							
	이자수입	159	3.1	168	2.4	143	2	
	기타수입	86	1.7	1,769	25.2			
지 출	합 계	5,078	100%	7,015	100%	7,152	100%	
	고유목적사업비			6	0.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078	100	7,009	99.9	7,152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입지가 불리한 남·북부 지역의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즉시 공장설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공장입지 활용 가능 부지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금년에는 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는 영동군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보은·단양·제천 산업단지 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확보할 계획임.

10.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

'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1.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 설치연도 : 1994년

4.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20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2014년말 추정액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6,624	20,530	59,321	16,226	47,000	△30,774	28,54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사업은 융자금사업으로써 '13년도에는 벤처·지식산업기업 지원 자금 등 3개자금 340억원을 계획하여 **총120개 업체 205억원을 집행하여 60.4%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 이는 전년도 융자 205억원을 계획하고 90개업체 144억원을 집행하여 70.4%의 집행율을 보였던 것보다 10%p가 감소하였음.
 -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 38개업체, 6,275백만원
 - 청년창업 지원자금 : 5개업체, 200백만원
 - 명절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77개업체, 14,055백만원
- 특히, 기업현장에서 명절전후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명절특별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 청년창업지원자금은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홍보 또는 개선방안 모색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
-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의지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의 저리의 자금조달 등을 위해 기금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계 획	집행실적	비율	계 획	집행실적	비율
72,578	72,914	100.5%	76,405	79,851	10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저리의 창업 및 시설투자 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2년	○ 3개자금 20,500백만원 - 벤처기업 지원 (12,000백만원, 50개업체) - 청년창업기업 지원 (2,000백만원, 40개업체) - 기업체 명절자금 지원 (6,500백만원, 30개업체)	○ 3개자금 14,435백만원 - 벤처기업 용자 지원 (10,675백만원, 60개업체) - 청년창업기업 용자 지원 (310백만원, 10개업체) - 기업 명절자금 용자 지원 (3,450백만원, 20개업체)	70.4%
'13년	○ 3개자금 34,000백만원 - 벤처기업 지원 (12,000백만원, 50개업체) - 청년창업기업 지원 (2,000백만원, 40개업체) - 기업체 명절자금 지원 (20,000백만원, 70개업체)	○ 3개자금 20,530백만원 - 벤처기업 용자 지원 (6,275백만원, 38개업체) - 청년창업기업 용자 지원 (200백만원, 5개업체) - 기업 명절자금 용자 지원 (14,055백만원, 77개업체)	60.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 · 벤처지식산업기업 지원 · 지역특화산업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소상공 육성 지원 · 시장정비사업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도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성장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 없음	
	'13	· 없음	
	'14	·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없음"		
기 타	"특이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유지 사유 (표 2-3)

사 업 명	'13년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① 벤처지식산업 기업 지원사업	12,000	벤처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대출, 원리금 회수가 주요 사업임	상 중 하
② 청년창업 지원	2,000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대출 및 원리금 회수가 주요사업임	상 중 하
③ 명절특별자금 지원	20,000	명절전후 유동성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대출 및 원리금 회수가 주요사업임	상 중 하
합 계	34,000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기금재원 : 출연금, 차입금, 용자상환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 기금규모('13.12.31.현재)

(단위 : 백만원)

조 성 액 (A)					집행액 (B)	잔 액 (C=A-B)
계	차 입 금	출연금	용자금 회 수	이자수입		
1,274,224	377,077	142,947	634,305	119,895	1,214,903	59,321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 고
수 입	합 계	63,517 100%	72,914 100%	79,851 100%	
	용자금회수(이자포함)	28,756 45.3	35,890 49.2	34,948 43.8	
	예치금회수	33,575 52.8	36,124 49.5	43,227 54.1	
	이자수입	1,186 1.9	900 1.2	1,676 2.1	
지 출	합 계	63,517 100%	72,914 100%	79,851 100%	
	용자금	7,689 12.1	14,435 19.8	20,530 25.7	
	예치금	36,124 56.9	43,227 59.3	59,321 74.3	
	차입금원리금상환	19,704 31.0	15,252 20.9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과 창업 및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이므로
-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기금의 지속적 조성 및 운용 필요

11. 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국
체 육 진 흥 과

'14년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 설치년도 : 2011년 3월 10일(조례 제3233호)
- 목 적 :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1,558	551		551	2,10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지출 없이 적립을 목표로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의 소득 증가에 다른 체육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존치 되어야 함
- 잘된 점
2013년 일반회계 전출금 500백만원과 이자수입 28백만원으로 528백만원을 추가 조성함
- 미흡한 점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순세계 잉여금의 3%이내)으로 20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매년 5억원 조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해 당 없 음		
'13년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제142조 충청북도체육진흥 기금조례	충청북도 체육진흥 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참가지원 -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활동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 음
	'13	없 음
	'14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출연금(순세계 잉여금의 3%이내)
- 과거 3년간의 지출 실적 : 붙임참조(표1-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충북체육진흥기금의 설립목적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성하는 재원으로 기금이 존치되어야 함

<표 1-1>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500	100%	1,030	100%	1,558	100%	
	출연금	500	100	500	48.5	500	32.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6	2.5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00	48.5	1,030	66.1	
	예수금							
	이자수입			4	0.5	28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00	100%	1,030	100%	1,558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500	100	1,030	100	1,530	98.2	
	예치금					28	1.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2. 재난관리기금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
- 설치연도 : 2005년 2월 4일(조례제정일 2005. 2. 4. 조례 제2848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230	4,308	23,196	5,643	3,557	2,086	25,28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13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 : 4,308백만원
 -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 2,988백만원
 - 소방분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161백만원
 -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 655백만원
 -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사업 : 108백만원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보수사업 : 396백만원

○ 잘된점

- '13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100% 확보
-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을 통해 지난 겨울 강설시 신속한 도로제설·제빙으로 겨울철 교통안전 및 재난예방에 기여함

○ 미흡한점

- 재난관리기금 용도범위가 정비·보수로 한정되어 재해위험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움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용되고 있으며,
- 재해취약지구 재해요인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재난 사전대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 왔음
- 향후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과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00	2,230	131	3,937	4,308	10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은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방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각종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노후시설물 보수 (1,610백만원, 21지구)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143백만원) ○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56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노후시설물 보수 (1,610백만원, 21지구)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143백만원) ○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476백만원, 소금 3,600톤) 	100%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 보수사업(3,021백만원/8지구) ○ 소방분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231백만원/2분야) ○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753백만원/4,000톤) ○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사업(108백만원/4지구)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보수사업(396백만원/16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 보수사업(2,988백만원/8지구) ○ 소방분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161백만원/3분야) ○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655백만원/4,000톤) ○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사업(108백만원/4지구)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보수사업(396백만원/16지구)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충청북도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소화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 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 정비사업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 구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난예방사업으로 69개 지구에 7,58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재해취약지역에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사업,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보수사업 등 다양한 재난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여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사용용도의 확대와 구체화가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 성격 및 규모
 - 기금재원 : 도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
 - ※ 도비출연금 :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표 4-1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안전문화 육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등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 지원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회적 재난의 응급복구 지원 등 사업범위를 확대토록 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14,312	100%	17,157	100%	8,127	100%	
	출연금	1,500	10.5	4,129	24	4,632	5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1,283	9.0					
	예치금회수	11,310	79	11,528	67.2	2,897	35.7	
	예수금							
	이자수입	202	1.4	1,485	8.7	574	7	
	기타수입	17	0.1	15	0.1	24	0.3	
지 출	합 계	14,309	100%	17,157	100%	8,054	100%	'13 사고 이월 : 73
	고유목적사업비	1,050	7.3	2,230	13	4,308	53.5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734	12.2	12,030	70.1	3,000	37.2	
	예치금	11,525	80.5	2,897	16.9	746	9.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3. 환경보전기금



'14년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목 적 :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
- 설치연도 : 2007년도
- 조례제정 : 2006. 5. 12 조례 제2925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582	1,828	23,170	5,693	2,200	3,493	26,663	

II. 분석결과

1. 총 평

○ 환경보전기금은

-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운용하여 2013년말현재 조성액이 231억원으로 목표액을 달성 함.
- '13년도에 사업 추진 실적은 없으며
- 자금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금고에 예치하거나,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기금 재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등이다.
-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구상 중이며,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금이다.

2. 사업운영의 성과

- 지출사업 없으므로 생략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	1.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3.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지원 4.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 음”	
	'13	“없 음”	
	'14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 음”	
기 타		'13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추진 할 것을 권장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항에 대한 부과금이기 때문에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금사업은 재원이 적정하며, 매년 20억원 이상 조성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함.
- 기금 수입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조달이 예상되므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됨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점점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이므로 계속 존치되어야 하며,
- 대표성을 갖는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10,928	100%	10,331	100%	9,457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500	4.6	0	0	0		
	예치금회수	4,847	44.3	4,221	40.9	3,875		
	예수금							
	이자수입	379	3.5	557	5.4	527		
	기타수입	5,202	47.6	5,553	53.7	5,055		
지 출	합 계	10,928	100%	10,331	100%	9,457	100%	
	고유목적사업비	1,807	16.6	2,261	21.9	1,828	19.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4,900	44.8	4,195	40.6	3,982	42.1	
	예치금	4,221	38.6	3,875	37.5	3,64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4.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충북도립대학
교 학 과

'14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충북도립대학운영에관한조례
- 설치목적 :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21세기 미래 산업사회의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설치연도 : 1989. 1. 9.(조례제정 1999. 10. 8)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 정 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700	1,582	118	1,215	1,124	91	9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3년 장학금 지급실적
 - 2,722명 / 1,581,705천원
 - 장학생 1인당 장학금액 : 581천원
 - 재학생(934명) 1인당 장학금액 : 1,693천원
 - 수혜율 : 수혜자수(2,722) / 재학생수(934) = 291%
 - 등록금 대비 지급비율 : 1,581,705천원/2,290,525천원 = 69%

○ 잘 된 점

- 장학기금 집행 실적 증가
 - 금 액 : '12년 1,397백만원 → '13년 1,582백만원(185백만원 증가)
- 국가장학금 지급비율 증가
 - 금 액 : '12년 1,017백만원 → '13년1,221백만원(204백만원 증가)

- 장학기금의 계획적 운영
 - 연초계획 1,234백만원 대비 집행실적 1,582백만원
(348백만원 상회 집행)
-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의 적정
 - 기금운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출
⇒ 2013년 집행금액 1,582백만원 전액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
- 미흡한점
 - 외부 기탁 장학금 유치 미흡
 - 적립기금이 매우 적어 기금수익을 얻기 곤란함
-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
 - 지속적인 교외 기탁 장학금의 유치 및 기금확보 노력
 - 기금운영 세부계획에 따라 기금 운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조성 노력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유치, 면학분위기 조성, 훌륭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13년도 당초 지급계획인 1,234백만원 대비 1,582백만원을 지급(128%)하여 다수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준 것으로 이는 기금의 본래 설치 목적에 크게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성취장학금 지급으로 학업 중도탈락 방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음.
 - 타 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12년도 수입액 1,404백만원에서 '13년도 수입액 1,603백만원으로 '12년 대비(114%) 하여 증가하였음.
 - 아울러 기금 집행액 전액을 고유목적(장학금지급)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매년 기금수입액을 확대하여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가능 안정성이 있음.
 - 위와 같이 집행실적의 증가에 따른 기금설치목적의 충분한 달성과 저소득층 지원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등 기금의 설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점, 또한 타사업과의 중복이 없는 점,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 집행액을 차지하는 운영의 건전성, 재원조정의 적정성 등을 볼 때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의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47	1,397	255%	1,234	1,582	12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장학금지급(547백만원)	○ 장학금지급(1,397백만원)	255%
‘13년	○ 장학금지급(1,234만원)	○ 장학금지급(1,582백만원)	12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국가 장학금(1·2유형) 지급 확대
 - ⇒ 2013년도 국가장학금 지급 : 1,852명/1,221백만원
- 취업률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성취장학금 지급 지급액 확대
 - ⇒ 2013년도 성취장학금 지급 : 211명/39백만원
 - ⇒ 산업기사, 컴퓨터, 외국어 관련 자격증 및 전공관련 대표 자격증도 성취 장학금 대상으로 인정하여 졸업 후 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
-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 복지 확대를 위해 장학금 지급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장학금 지급 개선

- 학과 의견을 받아 복지장학금을 신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산업기사 취득이 어려운 학과에 대하여 전공 관련 대표 자격증을 지정해 주어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 성취 욕구를 유발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북도립대학 운영에관한조례	우수학생유치 면학분위기 조성 훌륭한 인재육성	○ 장학금 지급 : 1,581,705천원 - 성적장학금 : 164,349천원 - 성취장학금 : 38,830천원 - 공로장학금 : 22,089천원 - 교내기타 장학금 : 57,700천원 - 국가장학금 : 1,221,221천원 - 전문대우수장학금 : 3,164천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 31,076천원 - 외부재단국가장학금 : 43,276천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당초 지급계획인 1,234백만원 대비 1,582백만원(128%)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수학생들의 장학혜택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특히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학업 중도 탈락방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분		지적내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우수인재 육성 등 장학기금 설치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있어 목적변경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특별회계 및 기성회계 출연금의 의존도가 높고 매년 장학금으로 일정부분의 기금이 장학금으로 지출되어 기금 적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으나 교외 장학금 기탁금의 수입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신속한 처리 및 신속성 집행을 통해 학생 서비스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금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 됨.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급	1,582백만원	교외장학금 기탁금의 수입 및 장학금지급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적 집행 ⇒ 학생서비스 만족도 제고	상
합 계	1,58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해 당 없 음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특별회계 및 교내회계 출연금 수입은 교내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기탁금은 기탁자가 원하는 선발조건을 갖춘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722	100%	1,495	100%	1,700	100%	
	출연금	160	22	160	11	160	9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79	25	91	6	98	6	
	예수금							
	이자수입	2		1				
	기타수입	381	53	1,243	83	1,442	85	
지 출	합 계	722	100%	1,495	100%	1,700	100%	
	고유목적사업비	631	87	1,397	93	1,582	93	
	용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1	13	98	7	98	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교외장학금 기탁금의 수입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신속한 처리 및 신속 집행을 통한 학생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해 현행과 같이 운용할 계획임
 - 교외 장학금 유치 확대 및 장학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
- 건의사항
 - 현재 기금 적립금이 적고, 기금수입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지출되기 때문에 독립된 장학기금 회계로 존치 요망.

15.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14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의 개요

1. 연혁

- 설치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 도모
- 설치연도 : 1981년 11월 4일
 - 조례제정 1996년 4월 12일(제2262호)
 - 조례개정 1999년 1월 15일(제2437호), 2004년 2월 7일(조례 제2791호), 2006년 3월 17일(조례 제2911호), 2009년 2월 6일(조례 제3133호), 2010년 4월 9일(조례 제3252호) 2013년 10월 31일(조례 제 3599호)
- 수혜단체 : 5개 단체
 - 충북4-H본부, 농촌지도사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 기금조성 목표액 : 2015년까지 100억원(단체별 20억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468	169	5,669	475	157	318	5,98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3년 사업실적 : 5개 사회단체운영 169백만원
 - 4-H연합회운영 보조사업 : 1개소 54백만원
 - 농촌지도자연합회운영 보조사업 : 1개소 36백만원
 - 생활개선회운영 보조사업 : 1개소 32백만원
 - 농업경영인회연합회운영 보조사업 : 1개소 22백만원
 - 여성농업인회운영 보조사업 : 1개소 24백만원
- 잘된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조하여 줌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핵심조직체인 농업인단체의 리더쉽 배양을 통한 원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농심함양과 인격향상을 위한 학교 4-H회 활동지원 부족
 -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농과계 학교 중심 영농정착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미흡
- 향후 조치계획
 - 전문농업인으로 경영능력과 지도력향상, 농심함양, 인격향상을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 강화
 - 농산물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현장교육 강화

- 사업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 기금존치 필요성 등 총괄
 -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 5개 농업인단체(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에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농촌 생활의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적 역할도모
 - 재원조성 중 적립기금은 충청북도의 전입금과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의 10%이상을 재적립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기타 지원금 등으로 하고 있음
 - 농업인단체는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화에 따른 농업여건 변화와 기상이변, AI 등 가축 전염병에 신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 농업·농촌의 지킴이 역할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리더 조직체로 또는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적립할 때까지 기금존치가 절실히 요구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9	154	91	170	169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농업인단체운영 보조사업 (5개소 169백만원)	○ 농업인단체운영 보조사업 (5개소 154백만원)	91%
'13년	○ 농업인단체운영 보조사업 (5개소 170백만원)	○ 농업인단체운영 보조사업 (5개소 169백만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리더 조직체로 육성,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함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농업·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와 국제시장 개방화로 어려운 농업여건 상황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농업인단체에 보조 지원함으로써 개방화의 대응능력 향상과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인적자원 육성에 기여함.
- 단체별 이사회 및 총회개최와 담당부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운용기금 교부,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장차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CEO 양성 기여
- 농업경영능력 향상으로 개방화 대응력 증대
- 농촌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과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법제2조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단체의 건전한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별 경진 및 대회, 성과평가, 발표 등 행사추진 ·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 단체 활성화 활동비 지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수여 · 지도력배양 교육사업 추진 · 우수농산물 판매 · 홍보사업 · 선진농업기술 국내외 연수 ·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사업 추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사업의 목적 달성

- 1981년부터 2013년도까지 충청북도 전입금, 적립기금 이자 수입의 10% 이상으로 총 5,669백만원의 적립기금을 조성하였으며
- 2013년도에는 5개 농업인단체(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에 운용기금 16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지도역량강화 교육, 임원 및 회원교육, 경진 및 대회, 성과평가, 현지연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국내외 선진농업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21세기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핵심 농업인 리더 조직체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 없음	
	'13	해당사항 없음	
	'14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 할 경우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과 그 이유 등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사회단체운영 보조사업(4-H회)	백만원 55	- 농업인단체 운영 보조사업 · 농업인단체 조직 강화 · 각종회의 및 행사지원 · 후계농업인 양성 및 선도 · 새로운 기술 습득 파급 · 농업인대회 등 - 일반회계 예산 편성시 탄력적인 사업 추진 어려움 - 조성목표액(100억원) 달성하여 자생력 갖춘 농업인단체로 육성하고자 함	상
② 사회단체운영 보조사업(농촌지도자회)	36		상
③ 사회단체운영 보조사업(생활개선회)	32		상
④ 사회단체운영 보조사업(농업경영인회)	23		상
⑤ 사회단체운영 보조사업(여성농업인회)	24		상
합 계	170	-	-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도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 기타 단체별 회비로 조달받고 있음

《표 4-1》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5,193 / 100%	5,523 / 100%	5,838 / 100%	
	출연금(전입금)	300 / 5	300 / 5	300 / 5	
	예치금회수	4,755 / 92	5,070 / 92	5,370 / 92	
	이자수입	133 / 2	148 / 2	163 / 2	
	기타수입	5 / 1	5 / 1	5 / 1	
지 출	합 계	5,193 / 100%	5,523 / 100%	5,838 / 100%	
	고유목적사업비	123 / 2	153 / 3	169 / 3	
	예치금	5,070 / 98	5,370 / 97	5,669 / 97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무국 운영 및 조직강화, 지도력 배양교육, 농업인대회 및 경진,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후계농업 인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국내외 선진농업 연수,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등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존치 되는 것이 농촌지역 사회 발전과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 선도 조직체로서의 자생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단체별 20억)원을 달성하여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